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7248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9.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8. 16.자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59,927,0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0. 1. 24.경부터 [redacted]구 C건물,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A'이라는 상호로 빵 및 과자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E(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채권최고액 864,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 2015. 6. 18., 채무자 F(B의 아들), 채권최고액 732,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제2순위 근저당권이 2016. 2. 15. 각각 설정되어 있고,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596,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최고액'이라 한다)이다.

다. B는 본인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주식회사인 원고로 전환하기 위해 상법 제299조의2를 근거로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2018. 3. 31. 기준 3,486,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B는 2018. 7. 16.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현물출자 자산총액을 5,435,438,704원으로, 이 사건 채권최고액 1,596,000,000원을 포함[1]한 부채를 1,951,078,704원으로 각 정하여 순자산가액을

1) 이에 관하여 '현물출자 재산확인 보고서'를 작성한 H회계법인은 '이 사건 채권최고액은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아닌 우발채무로서 회계상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아니나, 현물출자대상인 사업장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자원의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3,484,360,000원으로 평가하고, 발행주식수를 348,436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자본금을 3,484,360,000원(발행주식 총 348,436주 × 액면가 10,000원)으로 한 H회계법인 작성의 '현물출자 재산확인 보고서'(갑 제3호증)를 [redacted]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발기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9. 18.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으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원고의 자본금(3,484,360,000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3,484,36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6.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사업과 관련이 없고 B가 주채무자가 아닌 부채인 이 사건 채권최고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자본금(3,484,360,000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5,080,360,000원(= 3,484,360,000원 + 이 사건 채권최고액 1,596,000,000원)]보다 적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 9. 18.까지 중과세율(8%,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시 부동산 취득)을 적용한 취득세 327,684,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과세예고통지로 보아 2018. 8. 29. [redacted]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2018. 9.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3,486,000,000

출가능성이 있기에 부채로 산정하여 순자산가액을 표시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4%)로 산출한 취득세 139,440,000원과 지방교육세 13,944,000원, 농어촌특별세 6,972,000원 합계 160,356,000원(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 등'이라 통칭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redacted]특별시장은 원고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취득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므로 일반세율 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1. 5. 일부 채택 및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 계속 중인 201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합계 159,927,05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0. 위 마.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9. 5.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감면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이 감면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소 중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조세회피 등 다른 부정한 의도 없이 그대로 원고에 현물출자하였는바, 개인사업자인 B가 그 실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 형태만을 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현물출자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단지 물상보증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현물출자의 이행을 심사한 [redacted]중앙지방법원은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부채로 평가하여 자본금 산정 시 이를 공제하였다.'는 H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발기설립을 인가한 것인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순자산가액' 역시 기존 사업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현물출자액'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에도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

가) 원고가 적용을 주장하는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 12. 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그런 면에서 피고의 주장과 달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본문의 취득세 감면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2]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은데다가, 개인사업장을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고자 도입되었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사업장을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2)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본문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기존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제외한 것이 없는바, 현물출자 대상인 순자산가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나) B의 현물출자를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순자산은 변동이 없었다. 즉, 현물출자 전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순자산은 그대로 전부 원고에 현물출자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다만, B가 현물출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관련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순자산가액(현물출자액)이 그 액수만큼 차이가 나게 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발행주식수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뿐이다.

만일 B가 발기설립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5,080,360,000원이 되고 그 순자산가액 상당액 모두를 자본금으로 전환할 경우 1주당 10,000원의 주식 508,036주를 발행하였을 것인바, 위 주식 액면금의 합계인 자본금은 위 순자산가액과 같게 되므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런데 B는 이와 달리 발기설립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현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출자액에서 공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3,484,360,000원이 되고 그 순자산가액 상당액 모두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1주당 10,000원의 주식 348,436주를 발행함으로써, 위 주식 액면금의 합계인 자본금은 위 순자산가액과 같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순자산가액 5,080,360,000원, 발행주식수 508,036주, 자본금 5,080,360,000원)와 후자의 경우(순자산가액 3,484,360,000원, 발행주식수 348,436주, 자본금 3,484,360,000원) 모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전부를 모두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과 동일하게 되어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발행주식수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채권최고액 상당의 감액은 기존 사업장의 자산 중 일부를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므로, 만약 그 감액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자본금 액수(발행주식 총수)는, B가 원고를 발기설립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현물출자액을 기초로 [redacted]중앙지방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해진 것이다. 발기설립 절차에서 현물출자액 산정 시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수밖에 없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종국적인 부담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B로서는 현물출자에 앞서 미리 이 사건 채권최고액과 관련한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또는 이 사건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1,596,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물상보증인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산정하는 순자산가액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부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순자산가액 산정 방식에서 '부채'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이를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준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뚜렷한 문언 또는 체계상의 근거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행정안정부장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정담당자를 수신자로 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감면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사업 관련 부채만을 공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본문의 취득세 감면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은 동일한데, B는 2018. 9. 30. 분당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3,484,360,000원으로 계산하였고, 분당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이월과세를 적용한 바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3. 3. 23., 2014. 3. 14., 2014. 8. 20.,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 8. 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10. 2. 18., 2013. 2. 15.>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9. 6. 19., 2010. 12. 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0., 2001. 12. 31., 2008. 2. 29., 2010. 2. 18.>

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2. 18.>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 2. 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8. 2. 13.>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 2. 3.>

○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8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28.>
끝.